



# 축산물(쇠고기)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요령 개정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물(쇠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요령을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포장지에 등급표시 확인 날인하던 것을 스티커 부착으로 대체
- 등급판정확인서 사본(1두분 21박스)을 부분육 박스에 삽입하는 것을 폐지하고 부분육 공급명세서로 대체
- 겉포장에 표시하는 고기 부위를 대분할 부위에서 속포장 부위명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1. 목적

이 요령은 식육가공장에서 가공·포장하는 축산물 부분육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부분육의 생산·포장공정을 확인하고, 축산물부분육 공급명세서와 겉포장(BOX) 원료육 도체의 등급표시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과 소비자에 대한 대외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2. 식육가공장의 등급표시확인 신청 및 등급판정사의 지정

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로부터 부분육에 대하여 등급표시 등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식육가공장의 영업자 또는 식육가공장과 입가공 계약한 영업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최초 확인 희망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이하 “등급판정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나. 등급판정소장은 신청자로부터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할 지소장으로 하여금 당해 식육가공장을 방문하여 이 요령을 신청자에게 설명한 후 당해 식육가공장의 시설 및 작업공정 등이 등급표시 확인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소장은 당해 식육가공장의 시설 및 작업공정이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표시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소견을 등급판정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등급판정소장은 관할 지소장의 소견서를 검토하여 등급표시확인이 적합한 가공장인지를



결정하고, 등급표시확인이 승인된 식육가공장(이하 “등급표시가공장”이라 한다)에는 등급표시확인 담당 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마. 등급판정사는 등급표시 확인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등급표시가공장의 준수사항

가. 신청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부분육 생산 품질관리요원(이하 “품질관리요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등급판정소장이 실시하는 부분육 등급표시확인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품질관리요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는 등급표시 확인대상 부분육의 생산·포장 공정서를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 부분육의 대분할, 소분할 및 정형방법은 농림부고시 제2001-69호('01.11.21)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라야 하며, 부분육 공급명세서에는 대분할 부위명을 명시하여야 하고, 겉포장(BOX)에는 대분할 부위명 또는 속포장에 표시된 소분할 부위명을 전면 좌측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부위, 우족, 사골, 꼬리, 잡뼈에 대한 원료육 도체의 등급표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당 등급판정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요원은 부분육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등급판정 받은 도체를 등급표시가공장의 가공실내에서 발골·정형·가공·포장할 때에는 다른 도체에서 생산된 부분육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등급표시가공장에서는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상장용 부분육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상장 쇠고기 등급표시 확인용 부분육 생산일지(이하 “생산일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단, 소·수매용 부분육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 서식(소·수매육 등급표시 확인용 부분육 생산일지)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등급표시가공장에서는 농림부 고시 제2001-13호(2001.3.15) “축산물부분육상장표준규격”에 따라 속포장 및 겉포장의 표시사항(등급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등급표시는 원료육 도체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 신청자는 원료육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부분육 낙찰자가 요청할 시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관할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등급표시확인 신청

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쇠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를 등급판정소장(등급판정사)에게 부분육 생산 1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는 부분육 겹포장(BOX)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쇠고기 부분육 공급명세서(이하 “공급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겹포장(BOX)에 속포장된 부분육과 해당 공급명세서를 넣고 밀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판정사에게 등급표시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5.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 등

가. “제4호 가목”의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등급판정사는 다음 표시사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등급표시가공장의 생산일지와 공급명세서의 기재사항(BOX일련번호, 부위명, 중량, 원료육 도체의 육질등급, 원료육 생산 도축장명, 판정일자, 도체번호, 품종, 성별 등)
- (2) 등급표시가공장의 공급명세서상 기재사항과 부분육 속포장의 표시사항(부위명, 중량, 원료육 도체의 육질등급 등) 및 부분육 겹포장(BOX)별 표시사항(BOX일련번호, 부위명, 중량, 원료육 도체의 육질등급 등)
- (3) 농림부고시 제2001-69호(2001.11.21)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라서 부분육 공급명세서와 겹포장(BOX)에 동 구분방법의 부위명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단, 특수부위, 우족, 사골, 잡뼈에 대한 원료육 도체의 육질등급의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 용어로 부위명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등급판정사는 “가”목의 (1), (2), (3)사항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표시가공장에서 제출한 공급명세서의 등급표시 확인란에 확인자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 등급판정사는 “가”목을 확인한 후 <부도2>의 등급표시 확인스티커(이하 “스티커”이라

한다)에 등급판정사명과 확인일자를 기록한 후 겉포장(BOX) 전면의 우측상단 및 밀봉한 겉포장의 테이프위에 부착하여야 하며, 등급판정사가 스티커의 사용·보관 및 관리한다.

라. 등급판정사는 관할 등급표시가공장의 생산 및 등급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후 등급표시가공장의 생산일지의 확인란에 부분육 등급판정사인을 날인한 후 복사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관할 등급판정사는 신청자로부터 받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우측상단에 <부도1>의 “부분육 상장용” 인을 적색 잉크를 이용하여 [별표]의 예시와 같이 외곽라인에 겹쳐 날인하여 낙찰자가 요청할 시 제공하여야 한다.

## 6. 등급표시확인 부적합품의 처리

가. 등급판정사는 당해 도체의 종류, 등급판정내용 등과 부분육의 속포장 및 겉포장한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공급명세서와 겉포장에 날인하지 아니한다.

나. 등급판정사는 위“가”와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등급판정소장은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연 2회 이상 나타난 경우에는 등급표시 확인업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보고 등

가. 등급판정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할 등급표시가공장의 일일 부분육 확인 결과를 다음날 10시까지 지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소장은 다음달 5일까지 월실적을 등급판정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등급판정소장은 등급판정사가 부분육의 생산·포장 및 등급표시사항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관할 등급판정사는 도매시장에 지정된 부분육에 대하여 낙찰자가 요청할 시는 별지 제3호서식 하단에 <부도3>의 예시와 같이 부분육 도매시장·공판장의 낙찰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을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의 경영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